

서울고등법원 2022. 6. 30 선고 2022나2009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30 선고 2022나200933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합1091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변론 종결2022. 5. 19.

판결 선고2022. 6. 30.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합1091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335,00,000원"을 "335,000,000원"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3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335,00,000원"은 "335,000,000원"의 오키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승면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

별지